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여성친화도시 근거법령 및 지침에 맞춘 조례 현행화 필요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체계 구축

2. 주요내용

가. 법제명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 「여성발전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 (안 제1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 (안 제2조)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로 용어 변경 (안 제2조, 안 제11조)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명칭 변경 (안 제19조~제22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 변경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시민의 요구와 개입을 확산시키고 지역 여성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 강화

다. 양성평등위원회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기능 수행 (안 제24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역할을 양성평등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유사기능의 위원회 단일화

라.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관련 조항 신설 (안 제26조)

- 양성평등정책의 보편화에 필요한 사업 발굴, 컨설팅, 평가 등의 역할을 추진하는 기구에 관한 규정 신설

3. 조례안 : 불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구미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불임)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운영”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으로 한다.

제19조 중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을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으로 한다.

제20조 중 “모니터단”을 “시민참여단”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니터단”을 “시민참여단”으로 한다.

제22조 중 “모니터단”을 “시민참여단”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협의체”로 한다.

제2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구미시 양성평등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보편화에 필요한 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시의원, 여성정책 및 공간정책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27조를 삭제하고, 제32조를 제27조로 한다.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 모니터단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민참여단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위촉된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시민참여단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여성발전기본법</u> 」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구미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양성평등기본법</u> 」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 <u>성별영향분석평가</u> "란 「 <u>성별영향분석평가법</u> 」에서 규정한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생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u>성별영향평가</u> "란 「 <u>성별영향평가법</u> 」----- -----. 4. (현행과 같음)
제11조(<u>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u>) ① 시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u>성별영향분석평가</u>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u>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u>) ① ----- ----- ----- ----- ----- <u>성별영향평가</u> ----- -----.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u>여성친화도시 조성</u> <u>모니터단 운영</u> 제19조(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u>조성 모니터단</u>(이하 "<u>모니터단</u>"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구성) <u>모니터단</u>은 50명 내외로 구성하며 도시계획·교통·도로·녹지 등의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21조(기능) <u>모니터단</u>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22조(실비변상) 시장은 <u>모니터단</u>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u>여성친화도시</u> <u>시민참여단 운영</u> 제19조(설치) ----- ----- ----- <u>시민참여단</u>(이하 "<u>시민참여단</u>"----- -----. 제20조(구성) <u>시민참여단</u>----- ----- ----- -----. 제21조(기능) <u>시민참여단</u>----- ----- -----. 1. ~ 5. (현행과 같음) 제22조(실비변상) ----- <u>시민참여단</u>----- -----.
제5장 <u>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u> 제24조(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	제5장 <u>여성친화도시</u> <u>조성위원회 및 협의체</u> 제24조(설치) ----- ----- ----- -----

라 한다)를 둔다. <단서 신설>

제2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본청 실·국장, 출장소장, 구미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평생교육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 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3. 여성단체, 시민단체, 여성활동가 등 식견과 경험이 풍부

----- .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구미시 양성평등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제26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보편화에 필요한 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시의원, 여성정책 및 공간정책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제3항의 위원을 위촉
하는 경우 어느 한 성별이 10분
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
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과장
으로 한다.

제2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
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
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위원
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삭 제>

<삭 제>

2. 건강 등 위원 개인의 사정으
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계속 활동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29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
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
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
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토의안건을 사전에 통지하여
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삭 제>

<삭 제>

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
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하여
야 한다.

제3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
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
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생 략)

<삭 제>

제27조 (현행 제32조와 같음)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
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
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
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
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
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제19조(설치) 양성평등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미시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복지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여성단체협의회장, 여성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2. 여성관련분야 및 양성평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여성·가족 분야 및 각계각층 직능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 소관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2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
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25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
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
나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실비변상)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소관 실·과		복지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변 동 석
	담 당	이 현 선
	담 당 자	이 명 옥 (480-5132)